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1. 제안이유

- 플랫폼 노동자 등은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률이 낮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다.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제6조)
- 라. 지원사업 (안 제7조)
- 마.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 제11조)

3. 관련법령

- 해당없음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배달사업체”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과 배달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 등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 등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등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등의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군포시의회 의원

4. 시 소속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⑥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군포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